#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00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김희곤 • 박대수 • 박덕흠

이종배 · 정찬민 · 최영희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각급 심팜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횟수가 총 232회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경력이 부족한지방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그 지방심판원장이중앙심판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조).

#### 법률 제 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 판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지방심판원의 심판 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 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심판변론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은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
원장) ① (생 략)	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 장</u>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	<u>&lt;삭 제&gt;</u>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	
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